



제422회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수급사업자 서류보존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삭제〉
■ 김상훈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774호)

2025. 2.

정 무 위 원 회

전문위원 황 승 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상훈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4. 12. 20.
3. 회 부 일 : 2024. 12. 2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 보존 의무를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양측 모두에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수급사업자를 보호하려는 현행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서류 보존 의무를 지키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처분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러한 이유로 실제로 수급사업자가 서류 보존 의무를 위반하였음에도 현행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는 없음.

이에 서류 보존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 부과대상에서 수급사업자를 제외하여 수급사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임(안 제25조의3).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12항을 위반하여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수급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5조의3(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주자·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하도급대금이나 발주자·원사업자로부터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하도급대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25조의3(과징금) ① ----- ----- ----- ----- ----- ----- -----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제3조제12항을 위반하여 서류를 보존하지 <u>아니한 자</u> 또는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발급한 원사업자나 수급사업자	2. ----- ----- <u>아니한 원사업자</u> ----- ----- ----- -----
3. ~ 6. (생략)	3. ~ 6. (현행과 같음)

□ 현행 제3조제12항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도록 의무화¹⁾하고 있고, 제25조의3제1항제2호는 제3조제12항을 위반하여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하도급대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개정안은 현행 제25조의3제1항제2호 중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를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원사업자”로 개정하여 수급사업자에게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 현행법상 서면 발급과 서류 보존의 취지는 ‘제조등의 위탁’²⁾ 계약에서 열위적 지위에 있는 수급사업자가 서면계약의 체결을 원사업자에게 강력히 요구하기 어렵고, 구두계약의 경우 원사업자가 계약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내용을 입증하기도 어려우므로 양자 간의 계약 내용을 명백히 하고 분쟁 발생 시 사실확인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위탁내용의 불분명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보호하려는 것임.³⁾

1)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⑫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2)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하도급거래”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가공위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수리위탁·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하거나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조위탁·수리위탁·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한 경우, 그 위탁(이하 “제조등의 위탁”이라 한다)을 받은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등”이라 한다)을 제조·수리·시공하거나 용역수행하여 원사업자에게 납품·인도 또는 제공(이하 “납품등”이라 한다)하고 그 대가(이하 “하도급대금”이라 한다)를 받는 행위를 말한다.

3) 서울고등법원 2004.10.7. 선고 2003누 17773 판결

□ 나아가, 현행법이 원사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시장의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왜곡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가 사인 간의 사적 거래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두기 위한 것⁴⁾이므로 법률의 제정목적과 취지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수준에서 수급사업자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는 것은 적절한 입법이라 할 수 있음.

□ 아울러 현행법 제3조제12항에서 정하는 서류보존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수급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도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처럼 수급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봄.

문 의 처
02)6788-5109

4)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원사업자(原事業者)와 수급사업자(受給事業者)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하며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